

3과목 영업실무

해외파생상품 거래

1) 계좌의 종류

| 구 분 | 내 용 | 명의 및 계산 |
|------|---------------------------|------------------|
| 자기계좌 | 금융투자업자 자기재산으로 거래 | 금융투자업자 명의·자기 계산 |
| 총괄계좌 |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거래 | 금융투자업자 명의·위탁자 계산 |
| 중개계좌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나 위탁자가 직접거래 | 위탁자 명의·위탁자 계산 |

2) 신용거래 : 자기계좌, 중개계좌는 가능

장내 파생상품 거래시간

평상시: 9시 - 15시45분(돈육만 제외)

최종거래일 : 주식상품은 3시 20분

금리, 통화상품은 11시 반

적격개인투자자제도에 따른 서류

① 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 : 개인투자자의 거래단계를 확인

② 신규개인투자자

-사전교육수료확인증 : 금융투자협회

-모의거래이수확인서 : 한국거래소

③ 자격증보유자 및 업계종사자 면제적용

-자격증보유자(사전교육면제, 모의거래만 이수) : 파생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둔 금융자격증보유자

-금융투자회사(겸영제외)에서 파생상품업무경력 1년 이상자(사전교육, 모의거래 면제)

호가의 종류

| | |
|---------------------------------------|---|
| 지정가호가 (limit order) | 종목, 수량,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으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
| 시장가호가 (market ord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수량은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음. • 체결되는 가격으로 지정되므로 가장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주문 •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 우선하여 체결 |
| 최유리지정가호가 (best limit ord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 시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고, 매도 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 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 시장가호와 지정가호의 동시 성격 |
| 조건부지정가호가 (conditional limit ord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 시 가격, 종목, 수량을 입력하여 시장에 도달된 때 지정가호가로 매매 • 종가 단일가매매 전까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가 단일가매매 시에 시장가호가로 자동 전환되는 주문 |

호가의 입력

1) 주문조건 분류

| | |
|--------------------------------|--|
| 전량충족조건 (FOK, Fill or Kill) | 주문이 입력되는 즉시 전량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취소 |
| 일부충족조건 (FAK, Fill and Kill) | 주문이 입력되는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을 체결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에 해당하는 주문은 취소 |

2) 원월종목은 지정가만 가능

3) 선물 스프레드거래 : 접속거래시간에 지정가호가만 입력 가능

일중 가격제한제도와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 | 일중 가격제한제도 |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
|-------|------------------|----------------------|
| 용도 | 전일가대비 과도한 가격변동방지 | 장중 직전가 대비 과도한 가격급변방지 |
| 해당상품 | 모든 상품 | 적용되지 않는 상품 있음 |
| 해당종목 | 모든 종목 | 적용되지 않는 종목 있음 |
| 가격변동폭 | 당일 고정 | 체결 시마다 실시간 변동 |

매매체결의 원칙

(1) 일반원칙

1) 기본원칙 : 가격우선의 원칙 → 시간우선의 원칙

(2) 개별경쟁매매 구분

1)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접속매매)

2)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단일가매매) : 매매체결의 신속성 도모

| 적용시기 | 품 목 | 시 간 |
|--|-------------------------------------|------------------|
| 장 개시 전 시가 결정 시 | 전 상장품목 (돈육선물 제외) (평일 + 최종거래일) | 1시간(8:00~9:00) |
| 매매거래의 임의적 및 필요적 중단 후 최초의 약정가격 결정 시 | 대상품목 | 10분 |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종 목의 최종 약정가격 결정 시 (장 종료 시) | 전 상장품목 | 10분(15:35~15:45) |

협의대량거래(block trade)

거래당사자가 밖에서 합의하여 회원을 통해 이를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

플렉스협의거래

- ①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할 경우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이다
- ② 미국달러플렉스선물에 도입되어 있다
- ③ 미국달러선물환거래와 유사하다
- ④ 미국달러선물환거래보다 거래비용이 낮다

착오거래 처리

회원은 착오매매 발생일의 장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장 중에도 신청가능하다

| 착오사유 | 조치사항 |
|-----------------------|-----------------------------------|
| 위탁과 자기거래, 투자자구분의 착오거래 | 정정 |
| 위탁자의 파생상품 계좌번호 착오거래 |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하거나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 |
| 상기 이외 |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 |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요건

- ㄱ)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 ㄴ)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 ㄷ) 착오자가 본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 ㄹ)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해당 거래의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합산한 금액이 상품시장별로 100억원 이상일 것
- ㅁ) 구제의 신청은 해당 착오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 ① 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은 외화로 표시된 경우 원화로 환산한다
- ② 모든 거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 ③ 장내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거래소종가로 한다
- ④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야 한다
- ⑤ 거래시점에서의 목적에 따라 매매목적거래와 위험회피목적거래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증거금

- 1) 위탁증거금 : 사전, 대응가능하나 일부는 현금
- 2) 거래증거금 : 사후, 전액 대응가능
- 3) 유지위탁증거금
- 4) 추가증거금(Margin-call) : 개시증거금 까지

기본예탁금 제도

| | |
|------|--|
| 의 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별로 파생상품거래 이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탁금 •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주문 시 사전에 예탁하는 금액 → 단, 미결제약정을 전량 반대매매하더라도 결제시한인 익일 12시까지는 미결제약정이 있는 것으로 함. • 일반투자자들의 무분별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일종의 진입규제하는 취지 |
| 납부방법 | 현금 및 외화 또는 대용증권으로 예탁 가능하고 예탁된 금액은 전액 위탁증거금으로 충당 가능 |
| 납부제외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등인 경우 적용 제외 |

대용증권

상장주식과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종목 제외)

- 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 ②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채권,
-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보는 수익증권(MBS), ④ 상장지수펀드(ETF),
- ⑤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DR), ⑥ 상장주식연계증권(ELS), ⑦ 기타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 | |
|------|---|
| 과세대상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장내, 장외)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
| 세율 | 10% (현재 탄력세율 적용, 기본세율은 20%)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납부방법 | 연1회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 |

※ 타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고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별도 계산함.

3과목 직무윤리, 투자자분쟁예방

기업윤리와 직무윤리

① 기업윤리

- 경영전반에 걸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포괄적, 거시적 개념
- 형태 : 윤리강령(추상적인 선언문)

② 직무윤리

- 조직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윤리로서 미시적개념
형태 : 임직원행동강령

법과 윤리

| | 법 | 윤리 |
|------|-------------|-------------|
| 목적 | 사회질서의 수호 | 개인의 도덕심 수호 |
| 평가대상 |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 | 인간의 내면적인 행위 |
| 강제성 | 있음 | 개인의 양심에 의존 |

법의 수단은 현실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법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윤리경쟁력의 시대

- ① 직무윤리는 법규와는 달리 자발성,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짐.
- ② 비윤리적인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타율적 규제가 증가함.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 ① 칼뱅 : 근검, 정직, 절제를 통하여 부를 얻는 행위는 신앙인의 정당하고 신성한 의무.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원동력
- ② 베버 : 자본주의는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생긴 이윤추적의 결과

신의 성실 의무

- ① 자본시장법에서의 신의성실의무는 법적 의무로서의 측면과 윤리적 의무로서의 측면이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음.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권리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음.
- ② 신의칙 위반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이는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이해상충의 방지의무

1. 의의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투자자(고객), 회사 기타 신임관계에 있는 자(이하 '투자자' 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투자자 등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아니 됨.

여기서 "최선의 이익"이란 소극적으로 고객 등의 희생 위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객 등의 이익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결과에 있어서 최대의 수익률을 얻어야 한다는 뜻은 아님. '결과'와 '과정' 양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함.

행위 당시 고객 등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설령 결과에 있어서 고객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무방

2. 이해상충의 발생원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 내에서 공적업무영역(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권유, 자산관리, 증권중개)에서 사적업무영역(기업인수, 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3. 이해상충의 방지체계

- ① 이해상충발생 가능성 파악, 관리
- ② 이해상충발생 가능성 고지 및 저감 후 거래의무
- ③ 이해상충발생 회피의무 : 회피가 곤란하면 거래불가
- ④ 정보교류의 차단
- ⑤ 조사분석자료의 작성대상 및 제공의 제한 : 자신이 발행, 관련된 경우
- ⑥ 자기거래의 금지 :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

1. 상품개발단계
 - 회사 내 관련부서 간 사전협의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2. 상품판매 이전 단계
 - ① 불완전판매예방을 위한 교육
 - ② 소속임직원이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3. 상품판매단계
 - ①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② 설명의무 ③ 부당권유금지
4. 상품판매 이후 단계
 - ① 보고 및 기록의무
 - ② 정보누설 및 부당이용금지
 - ③ 공정성유지의무
 - ④ 판매 후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핑, 불완전판매배상, 판매수수료반환제도

적합성 원칙

-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확인
-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됨.

적정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음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 투자에 따르는 위험
-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①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
- ②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행위는 제외
 - 1개월 경과 후 권유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절한 표시의무

- ①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할 의무
- ② 중요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의무
 - 중요한 사실 :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실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등 모든 정보가 포함.
- ③ 투자성과보장 등에 관한 표현의 금지
 - 강행규정이며, 손실부담을 약속하여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 고객이 그 권유에 따라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1) 회사와의 관계

신임관계 및 신임의무의 준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시고용관계의 유무, 보수지급의 유무, 계약기간의 장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직무전념 의무

소속회사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계속성 여부도 불문하고 금지된다.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내부통제절차

- ① 기존의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한도규제는 폐지하였다
- ② 금융투자회사 및 그 종사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금융투자회사 및 그 종사자는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5년간 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부당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 ① 펀드매니저, 고유재산관리 업무자 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제공금지
단, 공연, 운동경기관람, 도서, 음반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제외함
- ② 판매사변경을 조건으로 재산상이익 제공금지
- ③ 운용사가 펀드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사(임직원포함)에 재산상이익 제공금지

내부통제기준

- ①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 ②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개정은 이사회보고로 가능하다.
-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⑤ 준법감시제도는 감사와는 달리 사전적, 상시적 통제, 감독하는 장치이다

내부통제의 주체별 역할

- ① 이사회 :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
- ② 대표이사
 -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 수립
- ③ 준법감시인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내부통제업무를 수행
 - 임면 시 이사회의결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
 - 해임 시 이사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이상) 중에서 선임
 - 임기는 2년 이상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 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담당 임직원에게 위임가능
- ④ 내부통제위원회
 - 위원장은 대표이사
 - 매 반기별 1회이상 회의개최
 - 일정규모이하의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⑤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회사의 본질적, 부수, 경영, 위험관리 업무불가

영업점에 대한 준법감시 통제

- (1) 준법감시인이 영업점에 대한 준법감시업무를 위하여 지명하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①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 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②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영업관리자 관련 기준
 -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자율규제

금융투자협회 :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이다. 위반에 대해서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권과 회원의 제명 또는 그 밖의 제재권을 발동할 수 있음.

② 행정제재 : 금융위원회

③ 민사책임

- 법률행위의 실효

| 하자가 있는 경우 | 중대한 하자 | 무효 |
|--|-----------|------------------------------|
| | 보다 가벼운 하자 | 취소 |
|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일시적 거래 | 해제(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원상회복의무 발생) |
| | 계속적 거래 | 해지(장래를 향하여 계약이 실효) |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 위반을 이유
- ㉡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형사책임 : 죄형법정주의
 - 행위자와 법인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금융분쟁조정제척

(1)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2) 분쟁조정절차

① 자체 감사실에 민원제기

② 분쟁조정신청

③ 사실조사 등

④ 위원회 회부 전 처리(신청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지 아니한 경우)

⑤ 합의권고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3)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따라서 조정결정내용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4) 소송지원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송지원요청 시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 ㄱ) 일반법으로서 관련 특별법이 있을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이 우선된다
- ㄴ) 특별법에 정함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 ㄷ)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한다
- ㄹ)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한다
- ㅁ)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ㅂ)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ㅅ)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ㅇ)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유출시 처벌

- ㄱ)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 ㄴ)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ㄷ)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적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 ㄹ)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자금세탁의 절차

- ① 예치단계
금융회사에 유입하거나 국외로 이송
발각이 쉬워 가장 어려운 단계이다
- ② 은폐단계
복잡한 금융거래를 거쳐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역외금융피난처를 이용
- ③ 합법화단계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

고객확인제도

1) 기본고객확인

- ①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신원, 실소유자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 ②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1500만원(미화 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송금, 환전 등) 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고객확인에 추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간소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낮은 고객,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좌개설 등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수립된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

ㄱ)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 ㄴ)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ㄷ)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자동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ㄹ) 객관적기준에 따른다

의심거래보고제도

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 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 ㄷ)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해당한다
- ㄹ)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